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022
----------	------

발의연월일 : 2017. 9. 1.

발의자 : 설훈 · 소병훈 · 위성곤
박홍근 · 유은혜 · 안민석
권칠승 · 조승래 · 신동근
이원욱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을 세우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토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와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9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과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련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생 략) <u><신 설></u></p>	<p>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⑤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과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련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u></p>
<u><신 설></u>	